

통일교육 표준강의안
평화번영정책과 남북관계 전망

통일교육 표준강의안

평화번영정책과 남북관계전망

인쇄일	2003년 12월 26일
발행일	2003년 12월 29일
발행처	통일부 통일교육원(연구개발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Tel 02-901-7165/ FAX 02-901-7088 http://www.uniedu.go.kr
기획	애드원 Tel 02-2272-7571
인쇄	모아기획 Tel 02-723-3671 (비매품)

※본 서의 무단전제 및 복제를 금합니다.

일러두기

1. “통일교육지원법시행령” 제14조 제2항은 각급 사회교육 기관이 교육훈련을 실시할 때 통일교육시간을 아래와 같이 교육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 2주이상 3월미만인 교육훈련과정 1시간이상
 - 3월이상 6월미만인 교육훈련과정 2시간이상
 - 6월이상인 교육훈련과정 3시간이상
2. 실제 통일교육을 실시할 때는 피교육자의 수준에 따라 탄력성 있게 강의를 전개하기 바랍니다.

차 례

1. 상황인식	10
2. 북한을 보는 시각	12
3. 평화번영정책	13
4. 북한의 최근 동향	18
5. 남북간 현안문제	23
6. 결론	26

부록

통일교육지원법(법률 제5752호)	28
통일교육지원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116호)	31

강의 제목 : 평화번영정책과 남북관계 전망

강의목표

- 한반도의 현 상황을 이해하고 북한을 보는 시각을 정리
- 평화변영정책의 주요 내용을 파악
- 북한의 최근 실상을 조망하고 남북관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고찰

기본 주제 항목

■ 상황인식

- 냉전질서의 잔존
- 북한·미국간 대립의 첨예화
- 북한 경제위기의 지속
- 확고한 남북신뢰관계의 미정착

■ 북한을 보는 시각

- 야누스의 두 얼굴
- 나름의 생존능력
- 변화의 불가피성

■ 평화변영정책

- 평화변영정책의 추진배경
- 평화변영정책과 화해협력정책과의 관계
- 평화변영정책의 개념과 의의
- 평화변영정책의 목표
- 평화변영정책의 추진원칙
- 평화변영정책의 추진전략 및 방향

■ 북한의 최근 동향

- 정치동향
- 경제동향
- 사회문화동향
- 군사동향

■ 남북간 주요 현안문제

- 북한 핵문제
- 남북 경제협력 추진
- 인도적 차원의 식량 및 비료지원

■ 결론

활용시 유의점

- 주제 항목별로 핵심적인 내용만 제시하였으므로 현장에서의 교육은 각종 문헌자료들과 최신의 정보를 폭넓게 활용하십시오.
- 강의시간 배정계획에 맞추어 필요한 항목의 핵심적 부분만을 취사선택하여 중점적으로 활용해도 좋습니다.

1. 상황인식

- ▶ 한반도에서는 아직도 냉전질서가 잔존하고 있다.
- ▶ 북한이 미국의 안보정책에 일차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 ▶ 북한의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 ▶ 남북관계는 대결과 협력이 교차하고 있다.

가. 냉전질서의 잔존

- 탈냉전의 세계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는 냉전질서가 잔존
 - 한국·중국, 한국·러시아 관계는 수교 이후 계속하여 확대·발전
 - 그러나 북한·미국, 북한·일본 관계는 적대적 관계를 지속중
- 동북아지역 안정문제와 관련, 역사적·지정학적 영향으로 「한국·미국·일본 對 북한·중국·러시아」라는 냉전시대 기본대립구도가 빈번히 재현

나. 북한·미국간 대립의 첨예화

- 체제생존전략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의혹은 미국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과 첨예하게 충돌
 - 對 테러전의 효율적 수행, 대량 살상무기의 확산 방지 및 자국안보를 위한 선제개입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
- 이에 미국은 북한을 자국안보를 위협하는 불량국가중 하나로 간주, 비확산이라는 전반적인 전략구상 틀 속에서 다룬 것임을 천명
 - 북한·미국간 적대관계 해소가 한반도 문제 해결에 핵심적 현안으로 등장

다. 북한 경제위기의 지속

- 1990년대 이후 북한경제는 내부자원의 고갈로 심각한 침체양상을 지속
 - 연속되는 마이너스 또는 저성장으로 경제규모 자체가 크게 축소
 - 에너지 및 원자재 부족으로 공장가동률이 30%를 밑돌고, 이로 인해 경제적 순환구조가 거의 마비상태
- 자금의 심각한 북한 경제난은 언제든지 체제위기로 전화, 한반도 정세 불안정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상존

라. 확고한 남북 신뢰관계의 미정착

- 「6. 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는 괄목하게 발전
 - 전쟁의 위협과 대남적대감이 현저히 감소
 - 사람의 왕래, 물자의 교류, 상호 협력사업이 크게 증가
- 그러나 전쟁경험과 반세기 이상 지속된 분단은 대립·반목 의식을 지속시키려는 관성력으로 작용, 여전히 대결과 협력이 교차하는 불안정한 모습
 - 남한사회 내부의 이념적 정체성 문제, 대북지원을 둘러싼 논쟁 등 냉전·분단의 관행과 문화가 산재
 - 북한도 정치·군사적 실질관계 개선에 여전히 미온적 태도를 견지

2. 북한을 보는 시각

- ▶ 현실적 안보위협이자 화해·협력의 대상이다.
- ▶ 제반 어려움에 처해 있으나 존속능력이 있다.
- ▶ 변화할 수밖에 없고,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가. 야누스의 두 얼굴

- 북한은 우리와 대결상태에 있는 경계 대상이자, 민족공동체로 가는 협력의 동반자
 - 튼튼한 안보를 통해 평화를 유지하면서 화해협력을 추구하여 북한 스스로 변화의 길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

나. 나름의 생존능력

- 북한체제는 실패한 체제이나 현상유지를 바라는 한반도 주변환경, 주체사상에 기반한 주민 결속력, 효율적인 주민 통제 시스템을 갖춘 체제
 - 한국전쟁, 사회주의권 해체 등 제반 위기를 극복한 위기관리체제로서의 성격 간직

다. 변화의 불가피성

- 극심한 경제난과 사회주의권 붕괴·탈냉전의 대외환경으로 북한은 변화할 수밖에 없고, 이미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
 - 「7. 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시장의 목인
 -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신의주 특구 지정과 경의선·동해선 연결
- 한편 북한은 변함 수밖에 없는 현실과 변화의 두려움 때문에 변화·개방의 선결요건으로서 미국으로부터 체제안전을 보장받기를 연망
 - 대미관계 개선을 외자유치와 경제재건의 관건으로 생각
- 그러나 북한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북한 스스로가 추진해야할 과제
 - 다만, 변화·개방에 대해 북한이 가진 우려와 내재적 한계를 감안, 안보우려 해소와 경제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

3. 평화변영정책

가. 평화변영정책의 추진배경

- 한반도 평화발전의 기본경로 및 추진원칙, 대한민국이 동북아시아 주도자로 나설 수 있는 현실적 전략 필요
- 안보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의 균형잡힌 정책구상 필요
- 북한 핵문제를 둘러싸고 제기된 안보환경의 변화 속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차원을 넘어서서 동북아 지역전반의 평화와 공동변영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대북정책을 운용해야 할 필요

나. 평화변영정책과 화해협력정책과의 관계

기존의 화해협력정책을 계승하는 측면과 기존 정책으로부터 발전적 변화를 모색하는 측면

■ 계승적 측면

- 평화공존노선 견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계승,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교류협력을 통한 민족공동체 건설, 기존 합의의 존중·계승

■ 발전적 측면

- 국가발전 기본전략의 위상확보,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통합전략, 남북관계를 넘어 동북아 차원에서의 평화와 공동변영 추구, 포괄적 안보 지향, 국민과 함께 하는 대북정책 추진

다. 평화번영정책의 개념과 의의

■ 평화번영정책(Policy of Peace & Prosperity)의 개념

- 2003년 2월 25일 출범한 참여정부가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공동 번영을 추구함으로써, 평화통인의 기반조성과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로의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전략적 구상

■ 평화번영정책의 의의

- 정전체제 종식 및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의지 천명
- 기존 남북협력사업의 구체적 결실을 도모하고 남북경협의 심화·확대를 통한 공동번영을 추구함으로써 남북 경제공동체의 형성이라는 목표 제시
-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도상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의지를 표명

라. 평화번영정책의 목표

■ 한반도 평화 증진

- 조건 : 당면과제인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간 실질협력을 증진하며 군사적 신뢰구축을 실현

■ 공동번영 추구

- 아시아와 세계의 중추국가로서 도약 가능성을 지닌 한반도의 번영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 이웃 국가들과의 공동번영도 함께 추구

마. 평화번영정책의 추진원칙

■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 민족생존을 위협하는 어떠한 형태의 무력충돌 가능성도 배제하기 위해 모든 갈등과 현안에 대해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원칙 견지
- 한민족의 공멸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전쟁도 반대하며, 무력사용은 최후의 방어수단으로만 인정

■ 상호신뢰 우선과 호혜주의

- 동북아 관련 국가들(남북한·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이 서로를 인정하는 토대위에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호신뢰 우선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역의 평화와 협력 추진
- 북한 및 주변국가와의 관계증진과 건전한 상호협력을 위해 서로 이익이 되는 호혜주의를 추구하고 일방주의를 배제하며 동등한 협력관계를 추구

■ 남북 당사자 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 등을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남북이 협의하여 추진
-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당사자 원칙을 기초로 국제사회와 유기적으로 협력 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도 기여하도록 노력

■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

- 정부는 정책추진의 대내외적 투명성 제고를 위해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법과 제도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함과 동시에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 대북 접촉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
-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초당적 협력 추진을 의미하며, 초당적 합의 형성을 위해서는 여·야당 및 국회의외의 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
- 특히, 국민적 합의를 형성함에 있어서는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민간 전문가 및 NGO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

바. 평화변영정책의 추진전략 및 방향

(1) 북한 핵문제 해결

■ 북한 핵문제 해결의 3대 원칙

- 북한 핵 불용
-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 대한민국의 적극적 역할

■ 대량살상무기 해결 정책기조

- 북한이 핵·미사일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면, 문제 해결단계에 맞추어 대규모 대북 경제협력 조치 단행
-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에 반대하며, 이에 가담하지 않는다는 입장 견지
- 안보위기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남북 경제협력이 평화증진에 미치는 영향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포괄안보를 지향

(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지난 50년간 한반도 질서를 규정해 온 불안정한 정전 상태가 평화상태로 전환되고, 안보와 남북 및 대외 관계 등에서 이를 보장하는 제도적 발전이 이루어진 상태를 의미
- 그것이 실현될 경우, 한반도 평화와 남북의 공동번영이 가능하게 되고 나아가 동북아 경제중심국가의 토대가 마련될 것

① 추진방향

- 남북 당사자 해결원칙과 국제사회의 협력 확보
- 남북간 포괄적 협력과 실용주의 외교 병행 추진
- 북한·미국, 북한·일본 관계 정상화 지원 등 새로운 국제환경 조성
- 평화체제에 대한 실질적 보장과 제도적 보장 병행

- 확고한 평화보장을 위한 국방태세 확립
- 한미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추구

② 단계별 추진전략

- 1단계 : 북한 핵문제의 해결과 평화증진 가속화
- 2단계 : 남북협력 심화와 평화체제의 토대 마련
- 3단계 : 남북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의 구축

(3)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

동북아 경제중심건설은 동북아의 지정학적 중심(Hub)인 대한민국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바탕으로 동북아의 물류, 관광, 무역, 산업의 중심 및 해양과 대륙을 잇는 경제의 관문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21세기 핵심국가발전 전략

■ 추진방향

- 평화체제 구축 노력과 더불어 남북 경제 교류협력의 심화를 통한 한반도 경제 공동체 형성 추진
- 동북아 평화협력체 추진
 - 미국·일본·중국·러시아를 대상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협의하기 위한 포괄적 다자협력체 구성 추진
- 동북아 경제협력체 주도적 모색
 - 한국·중국·일본간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과 병행하여 남북한 및 4개국이 참여하는 동북아 경제협력체 구성 추진
- 남북 경제협력의 구체화·제도화를 통해 경제공동체를 형성, 동북아 경제네트워크 속에서 남북관계 증진 모색

4. 북한의 최근 동향

가. 정치동향

북한은 1998년 9월 개정된 헌법에서 김일성 사망 후 국가주석제를 폐지하고 국방위원회를 국가최고권력기관으로 격상시키고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으로 추대

(1) 총체적 위기관리를 위한 「선군정치」지속 강화

- 통치이념으로 강성대국 건설을 표방

- 사상대국 · 군사대국 · 경제대국을 강성대국 건설의 세 기둥으로 지칭

- 통치방식으로는 선군정치를 표방, 총체적 위기관리 수단으로 환용

- 보도매체, 각종 집회 등을 통해 군과 주민의 체제결속 및 사상교양 강화 도모

※ “선군정치는 나의 기본정치방식이며 우리혁명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는 「만능의 보검」입니다”(김정일 국방위원장 재추대 평양시 군중대회, 김정일 연설, 2003. 9. 4)

(2) 기존 정치이념을 고수하며 「실리사회주의」를 주창

- 사회주의 원칙을 고수하는 가운데 「실리사회주의」 이론화를 시도

- 실리사회주의를 “사회주의 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가장 큰 심리를 얻을 수 있는 경제관리 방법을 시행하는 것”으로 정의

- 이념적 구호보다 각 분야에서 실리 강조

- 미래지향적인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정보산업 및 첨단과학기술 중점 육성, EU를 비롯한 서방국가와의 관계개선 도모 등

(3) 정권의 안정화를 취하며 실무중심의 인사기용 및 세대교체

- 권력핵심인 당 정치국·비서국 등의 인물은 큰 변화없이 내각중심의 실무 테크 노크라트 중용
 - 혁명1세대인 고령 및 지병인물 퇴진 : 이을선, 백학립, 김철만, 최영립 등
 - 최고인민회의의 11기 1차 회의시(2003. 9) 경제분야 인물을 요직에 기용 : 총리 박봉주(전 화학공업상), 국가계획위원장 김광린 등

나. 경제동향

심각한 경제난 타개를 위해 대내적으로는 「7. 1 경제관리개선조치」(2002. 7. 1)와 대외적으로 「신의주 특별행정구」 도입(2002. 9. 12)을 시도

(1) 「7. 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시장경제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 7. 1 조치로 배급제가 구입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장기능 강화
- 2002. 12월부터 농민시장에서 농산품 외에 공산품까지 거래 허용
- 2003. 3월부터 평양시를 비롯 주요도시에 대규모 종합시장 건설

「7. 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주요 내용

▶ 물가·임금·환율 등 가격기구의 대폭 조정

- 식량·생필품 등의 국정 공급가격을 농민시장 가격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폭 인상 (수십 배~수백 배 가격차 조정)
- 노동자·사무원 등 전 직종의 임금을 평균 18배 인상하고 '실적에 따른 분배원칙' 아래 차등 지급
- 종래 고평가되어 온 북한 원화의 對달러환율을 나진·선봉지역 수준으로 현실화(1\$당 2.2원 → 150원) 및 '외화바꾼돈표 폐지' 등

▶기업의 경영 자율권 확대

- 「당간부」가 행사하던 기업경영 권한을 「지배인」에게 위임함으로써 중앙의 간섭을 배제, 자율성 제고
- 세부 생산지표 설정권, 감가상각금·초과이윤 처분권 등을 기업에 위임, 기업의 인센티브제 강화, 생산의 효율성을 제고

▶식량·생필품 배급제 단계적 폐지

- 국가가 수매가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던 식량·생필품을 주민들이 국영상점에서 인상된 가격으로 직접 구매토록 조치

(2) 공장·기업소의 수익중심 운영체제로의 전환

■ 독립채산제 실시로 기업의 경영자율권이 부분적으로 확대

- 일부기업 경영권을 당간부에서 지배인으로 이양
- 기업간 원자재 교류를 위한 물자교류시장 운영
- 개인별 실적에 따른 성과급 제도

■ 경제정책이 명령형에서 지도형으로 변화

- 종래 당국이 국정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으나 7. 1조치 이후 가격의 탄력적 적용 허용
 - ※국가가 결정한 가격의 5~10% 범위내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결정가능 (2002. 9 김용순 무역성 부상)
- 7. 1조치의 연장선상에서 대내 공급능력 확대 도모
 - ※식량증산 5개년계획(2003~2007), 에너지문제 해결 3개년계획(2003~2005) 등 수립 추진

(3) 사적인 상업활동 범위확대

■ 매대·점포 증가로 개인영리활동 활기

- 매대·점포 운영자는 판매이익의 일부를 당국에 납부하고 잔여이익금을 개인 몫으로 보장
- 평양을 비롯한 북한전역에 간이 매대 설치

(4) 대외경제개방준비 본격화

- 1990년대 중반부터 자본주의 연구 본격화
 - 1997년 김일성대학 경제학과에 자본주의강좌 개설
 - 2000년 무역성산하에 「자본주의제도 경제연구원」 신설 등
- 2000년 이후 해외연수를 통한 현장학습 중점
 - 남한, 동남아, 유럽 등에 연평균 300여 명의 해외시장경제 연수 및 유학 실시
- 7. 1조치 이후 「특구」 추가지정 등 대외경협모색
 - 신의주특별행정구(2002. 9), 금강산관광지구(2002. 10), 개성공업지구(2002. 11) 지정 및 관련 법규제정

(5) IT산업의 선도적 역할과 이동통신사업 중시

- 21세기를 정보산업시대로 규정, IT산업을 통한 단번도약 역설
 - 통신부분을 경제난 타결을 위한 실리중심사업으로 육성
 - 2002년도 전국 시·군까지 연결한 광케이블·컴퓨터 통신망을 농촌의 里까지 구축 추진
- 이동통신사업 적극 추진
 - 2002. 11월 평양·나선시에 휴대전화개통 이래 남포·개성·각도 소재지 및 함경북도 9개 시·군에 이동 통신망 개통
 - ※ 태국 록슬리사와 2002년 11월 평양·나선시에 휴대전화 3,000여 대 보급(2003. 2. 1, 조선신보)

다. 사회문화동향

(1) 통제사회에서 실리중시 사회로 변화

- 장마당 거래활성화로 인구이동 증가 및 사회유동성 확대
 - 1998년 헌법개정시 거주이전의 자유가 명문화되면서 이동인구가 급격히 증가

■ 개인별 자영업 성행으로 새로운 사회계층 등장

- 자기 집에 간판을 내걸고 무속인, 여인숙, 식당 등 개인 사업 운영

(2) 인민 취향의 대중문화 확산

■ 흥미위주 TV방송편성 및 생활가요 보급 확대

- 만화, 영화, 드라마의 방영비율 증대(2002년 18% → 2003년 24%)

■ 드라마 소재의 다양화

- 남녀문제, 주민생활, 스포츠, 컴퓨터, 여가 등으로 다양화하면서 개방에 대비한 주민계도 수단으로 활용

라. 군사동향

(1) 경제건설에 군을 대대적으로 동원·활용

■ 경제건설에서도 군의 역할을 강조하고, 주요 경제건설 사업에 군을 대대적으로 동원

- 서해갑문공사, 수력발전소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
- 식량난 타개를 위한 군의 농촌지원 사업
- 평양시 거리 정비, 유원지 조성 등에도 군을 동원

(2) 남북교류협력 추진에 필요한 군사보장장치 마련에 적극 호응

■ 철도·도로 연결사업을 위한 「군사보장 합의서」 채택 및 군 당국자간 협력 증대

- 비무장지대 일부 구간에 대한 개방, 지뢰제거 안전보장 등에 합의

(3)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에는 소극적

■ 남북교류협력 차원이 아닌 군사적 분야의 협력에는 소극적 자세로 일관

1998년 9월 출범한 김정일 체제는 군부중심의 위기관리체제를 유지하면서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적응하기 위해 생존전략차원의 변화를 모색

- 기존의 정치이념과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외교, 대남분야를 중심으로 실리추구에 중점

5. 남북간 현안문제

가. 북한 핵문제

(1) 북한의 핵개발 관련 실태

- 북한은 2002년 말 핵 동결 해제조치 시작, 2003년 초 NPT 탈퇴, IAEA 사찰관 강제추출 등의 단계적 조치
- 2003년 4월 북경 3자회담과 5월 미의회 대표단 방북시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폐연료봉을 재처리하고 있다고 주장, 7월초 북한·미국간 실무 접촉시 폐연료봉의 재처리 완료를 주장했으나 북한의 핵보유 여부에 대해 아직 정확히 확인된 바는 없는 상태

(2) 우리 정부의 해결 노력

- 원칙 : 북한 핵 분용, 평화적 해결
 -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에 전쟁가능성을 높이고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므로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대화를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함.
 - 한국·미국, 한국·일본, 한국·중국 정상회담, TOOG회의, 아세안+3 외무장관 회담 등을 통해 이러한 원칙을 재확인
- 3자회담에 이어 6자회담을 통해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
 - 정부는 한국·미국·일본 3국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중국·러시아 등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다자대화 방식으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추진
- 남북대화를 통한 북한 설득
 - 일부에서는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에 우리 정부가 배제되어 있다고 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남북대화라는 수단을 통해 북한을 계속 설득

나. 남북 경제협력 추진

(1) 남북 철도·도로 연결

- 경의선은 개성공단 개발을 촉진하고 인천공항의 허브(Hub)기능을 강화
- 동해선은 육로관광 등 금강산관광 활성화 및 설악산과의 연계관광을 촉진시킴으로써 동해권 경제발전에 기여

철도·도로 공사 추진현황

▶ 우리측

- 경의선 : 철도(2002. 12. 31) 및 도로(2003. 10. 31)공사 완료
- 동해선 : 철도·도로 노반공사 진행

▶ 북측

- 경의선 : 철도는 군사분계선 지점에서 3.4km 궤도부설, 도로는 노반공사 대부분 완료
- 동해선 : 철도는 군사분계선 지점에서 4.7km 궤도부설, 도로는 노반공사 및 구조물 공사를 모두 완료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수준

(2) 개성공단 건설

- 개성공단 개발은 육로를 이용한 대규모 인적 교류를 수반하고 경제협력을 통한 군사적 신뢰구축 및 남북 경제공동체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의미
- 개성공단의 국제적 경쟁력을 위한 북한 당국의 협조를 확보하고 사업자간 협의를 당국차원에서 뒷받침
 - 북한은 2003. 10. 1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및 세금규정을 발표하는 등 개성공단 관련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
 - 우리 정부도 남북관계 발전, 나아가 한계상황에 처한 중소기업의 활로모색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다각적인 지원방안 검토

(3) 금강산 관광사업

- 금강산 관광사업은 관광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육로관광, 특구 지정 등 관광 활성화의 전기 마련
 - 육로관광은 해로관광에 비해 요금이 인하되고 이동시간이 단축되는 만큼, 관광객 증가 기대
 - 또한 온정리, 성북리, 고성군, 장전항 일대의 총 6만여 평이 관광특구로 확정
- 정부는 관광코스 추가 개방, 시설확충 등을 통해 관광상품의 경쟁력을 갖추므로써 수익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며 북한에 대해서도 특구개발 후속조치, 관광사업 참여확대 등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할 계획

남북경제협력의 제도적 보장

- ▶ 이미 발효(2003. 8. 20)된 4개 경험합의서의 후속조치와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 합의서 체결을 위한 조치 이행에 합의

다. 인도적 차원의 식량 및 비료지원

- 지원의 원칙과 의미
 - 한국·미국 정상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정치적 상황 전개와 연계하지 않고 추진해 나갈 방침
 - ※능력의 범위내에서 성심성의껏 돕는다.
- 또한, 어려운 주변 정세 속에서 남북대화과 협력을 지속하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
 - 인도적 지원은 북한의 어려운 경제난 해소에 도움이 되면서, 남북대화과 교류 협력을 이끌어 내고 북한을 설득하고 변화시키는 데 유용한 수단
 - 북한의 대남 의존도 : 연간 식량 150여만 톤 부족, 쌀지원 40만 톤과 비료 20만 톤이 60여만 톤의 역한(3배 증산효과)을 하면 약100여만 톤을 우리에게 의존

- 북한이 생존권 확보차원으로 핵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대북식량 지원 수준으로 북측 태도를 제어하는 데는 한계
- 그러나, 북한에 “줄 것은 깨끗이 주고 또 요구할 것은 당당히 요구”하면서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6. 결 론

- 대외적인 통일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 냉전체제 종식에 따른 세계질서의 재편에 따라 한반도 주변국들도 자국의 국익과 관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희망
 - 힘의 우위에 의한 북한의 명쇄·고립보다는 화해협력을 통해 남북의 분단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
- 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화해협력 정책을 바탕으로 평화공존의 남북 관계를 정착시키고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을 지향
 - Peace-keeping : 전쟁도발 억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 Peace-making : 남북관계 진전을 통한 북한의 변화 유도
- 북한은 체제 생존을 위해 심리를 추구하는 가운데 대내외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변화추구가 불가피한 상황
 - 현재 북한의 변화상황을 볼 때 내부적 필요에 의해 일시적으로 변화의 속도를 조절할 수는 있어도, 변화의 흐름을 과거로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 이러한 북한의 변화를 근본적인 개혁·개방으로 유도하는 유인체계가 필요
- 국가안보의 강조
 - 국가안보는 화해협력과 평화변영을 위한 초석

부 록

통일교육지원법(법률 제5752호)
통일교육지원법시행령(대통령령 제16501호)

통일교육지원법

제정 1999. 2. 5 법률 제5752호

제1조(목적)

이 법은 통일교육을 촉진하고 지원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통일교육”이라 함은 국민으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교육을 말한다.

제3조(통일교육의 기본원칙)

- ①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 ② 통일교육은 개인적·파당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4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교육의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
 2. 통일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각 부처 및 기관·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통일교육요원 및 통일대비요원의 양성·지원에 관한 사항

4. 통일교육실태의 조사·평가 및 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통일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
- ③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설치)

- ①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통일교육심의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중 6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 ④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정부의 임무)

- ① 정부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통일교육 요원의 양성·지원, 교재의 개발·보급 기타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한다.
- ② 정부는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재(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통일교육의 반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에서의 통일교육진흥)

- ① 정부는 초·중등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설립·경영하는 자에게 통일문제와 관련된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연구소의 설치·운영 등을 권장할 수 있다.

제9조(통일교육수강의 요청 등)

-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종사하는 자, 통일대비 업무에 종사하는 자 기타 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통일교육을 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통일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교육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가 소속하여 있는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통일교육협의회)

- ①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협의·조정 기타 상호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통일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고발)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일교육지원법시행령

일부개정 2001. 1. 29 대통령령 제17116호 통일부

제1조 (목적)

이 영은 통일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일교육기본계획)

-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통일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기관 및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구성)

- ① 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1. 1. 29>
 1. 교육인적자원부차관· 통일부차관· 법무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문화관광부차관· 노동부차관· 여성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과 국무조정실소속 공무원중 당해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6인
 3.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
-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각 1인씩 호선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전문위원)

- ①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5인이내의 비상임 전문위원을 수 있다.
- ② 전문위원은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③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통일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9조 (실무위원회)

- ① 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1. 1. 29〉

1. 교육인적자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노동부·여성부·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소속 실·국장급 공무원중 당해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임명하는 자

제10조 (협조요청)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경비의 지원 등)

- ①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지원 대상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일교육시설·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통일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3. 통일문제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4. 통일관련 강좌의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5. 기타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통일교육시행에 필요한 비용
- ②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의 수행능력, 전년도 실적 및 당해연도의 사업

계획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원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통일부장관은 경비지원의 효과를 지원대상자별로 3년마다 심사하여 계속 지원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통일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14조 (통일교육의 반영)

- ①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교육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 2. 교원연수에관한규정 제2조의 교원연수기관
 - 3. 기타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연수기관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교육기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교육훈련과정에 다음 각호의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2주이상 3월미만인 교육훈련과정 : 1시간이상
 - 2. 3월이상 6월미만인 교육훈련과정 : 2시간이상
 - 3. 6월이상인 교육훈련과정 : 3시간이상

제15조 (통일교육협의회)

-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 1. 통일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2. 통일교육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의 발간
 - 3. 통일에 관한 계몽 및 홍보
 - 4. 통일교육종사자의 자질향상과 복리증진

5.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기타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과 지방협의회를 둘 수 있다.

부 칙 (제16501호, 1999. 8.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 2001. 1.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9>생략

<70>통일교육지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중 “통일부차관·법무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교육부차관”을 “교육인적자원부차관·통일부차관·법무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제9조 제2항 제1호 중 “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로 한다.

<71>내지 <152>생략

부 칙 (여성부직제) <제17116호,2001. 1.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통일교육지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중 "노동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과 여성특별위원회 및 국무조정실"을 "노동부차관·여성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과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9조 제2항 제1호 중 "노동부·기획예산처·여성특별위원회"를 "노동부·여성부·기획예산처"로 한다.

⑨내지 ⑭생략

